

안전인증소식

**[Q&A]****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제개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t;편집자주&gt;

**Q**uestion PB상품(Private Brand)의 법적 책임 문의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제조원과 판매원이 별도 법인의 회사일때, 이제품이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 책임이 제조원과 판매원 중 어느 회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PB상품일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장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148종의 전기용품을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품출고 전(통관 전)에 안전인증 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에 한하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해 제품안전성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에게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와 수입, 판매, 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Q uestion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문의

당사의 제품은 CCFL 등기구를 생산하는 회사로 제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SMPS: 상용 전원인 220Vac를 DC 24V로 변환합니다.
- inverter: DC24V를 입력 받아서 약 AC1000V정도로 변환하여 CCFL lamp를 구동합니다.
- CCFL lamp
- 소비전력: 50W

상기의 제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질의하신 CCFL 등기구는 일반조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등기구)에 해당되며 램프와 컨버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CCFL 등기구에서 컨버터는 안전인증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CCFL등기구에 사용되는 램프는 사용 전압에 관계없이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Q uestion 제품 입찰(납품) 관련

수요처에 LCD모니터를 입찰하려 합니다. 제품 스펙은,

- 규격: LCD 70인치 이상, 220AC

우선 수요처에서 방송통신기기인증을 요구하나,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품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또한 상기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기인증이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사에서 문의하신 LCD 모니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과 전파법에서 규정한 전자파적합등록 대상품목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해주고 있고,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제품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시 해당시험(전자파적합성)을 면제해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